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정책방향



金 政 男

〈성대 경영학과 교수·經博〉

目 次

1. 머리 말
2. 정부의 재정 조달방법
3. 조세부담의 측정
4. 과세의 형태와 정책방향
5. 맺 음 말

1. 머리 말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먼저 재정자원을 조달하고 이를 일정한 정책방향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과거에 재정조달을 위한 세제를 관리함에 있어서 재정자립과 개발재정의 수요충족을 위한 내용으로써 다루어져 왔다. 즉, 정부에서 경제개발을 위한 전략사업을 지원하고 국민 저축을 보호하여 경제개발 지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적 경제환경과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은 과거의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성장 경제여건하에서는 세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구적 기능인 공평과세의 원칙과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근원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전환되어져야 한다.

2. 정부의 재정조달 방법

정부는 정부의 의무적인 제반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원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조달 방법은 화폐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기본적으로는 경상수입방법과, 정부채무 및 화폐창출 방법으로 대별될 수 있다. 경상수입 방법은 또한 조세에 의한 수입과 조세이외의 수익으로 구분되어서 관찰되어질 수 있다.

먼저 세원수입은 다시 영리수입과 비영리수입으로 나누어진다. 정부에 대한 투자수입과 재산수입은 영리수입에 속하며 거출금이나 수수료는 비영리 수입에 속한다. 여기에서 수수료는 정부의 임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수수료와 사용료로서 구분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조달은 앞에서 설명된 세원수입

보다는 대부분 세금에 의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에 의하여 정부의 재정조달 수단으로서 관리되어 질 수 있다.

① 소득발생에 따른 과세 : 정부는 국민의 소득발생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소득발생에 따른 세금은 수익세와 소득세로서 대별된다. 소득세에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가 있으며 수익세에는 사업세, 건물세, 기업수익세, 토지세 등이 포함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기업에서 소득이 발생될 경우에 자본수익세와 노동수익세가 구분되어지게 된다.

② 소득사용에 따른 과세 : 국민은 소득을 사용할 때에는 세금을 내게 된다. 소득사용시의 세금은 일상거래에 대한 내용에 과세되는 일반거래세, 특별지출세 그리고 관세로서 대별되게 된다. 일반거래세는 여러 단계를 걸친 거래의 상태에 따라 부과되는 세와 단일 거래단계의 액수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있다.

③ 재산에 대한 과세 : 정부는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 재산부문에 관한 과세는 재산상태에 따른 과세와 재산거래에 따른 과세 그리고 재산의 증식에 따른 과세로서 대별되며 이중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의 거래분야는 상속세, 취득세, 자본거래세로서 대별되어 체계화 되어지게 된다.

이와같은 여러가지의 정부재원 조달방법은 일정한 원칙과 정책적 목표에 따라서 수입면에서는 공평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고 지출면에서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먼저 과세면에서 2가지의 기본적 원칙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즉 수익부담의 원칙과 지불능력의 원칙에 따라 재정조달을 위한 세금이 기본적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수익부담의 원칙

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재원이 목적으로 과세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는 가격의 성격을 띤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익부담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른 수익원칙과 비용에 합당한 수익원칙으로 구분되어 관찰될 수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일반시민이 얻게되는 효용가치에 합당하도록 재정조달에 기여를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입각한 댓가를 요구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따른 수익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모든 공공사업에 적용될 수는 없다.

3. 조세 부담의 측정

조세 부담의 형태는 조세의 종류와 세율에 따라서 결정된다. 따라서 유효한 세율의 형태를 형성하기 위하여는 조세 부담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세의 부담은 국민의 지불능력 원칙에 따라 측정되어질 수 있다. 소득은 욕구충족 가능성 즉, 효용을 위한 적절한 지표로써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효용의 개념이 소득세의 세율 형태를 결정하는데 일정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득의 기초금액 즉, 일정한 소득내용이 과표 기준으로서 과세될 수도 있으며 동일한 상대적 희생원칙에 따라 소득내용이 과세될 수도 있다. 국민의 지불능력 원칙에 따라 과세의 형태가 결정될 경우에 지불능력이 올바르게 파악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불능력의 원칙은 모든 소득취득자들이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소득의 한계효용이 감소한다는 가정을 갖고 있는 약점이 있다. 이러한 가설은 재화가 소비되는 경우에 한계효용이 감소한다고 입증된다면 적용될 수가 없게 된다. 즉 소득과 함께 여러가지 상이한 재화에 대한 수요

가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특정한 욕구층의 한계효용이 감소한다는 것과 소득이 창출할 수 있는 효용과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욕구들이 과거의 욕구에 비하여 절대로 긴박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부유하면서도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은 단 일원의 손실도 그의 소득에 비하여 아주 적은 소득을 갖는 사람처럼 대단히 괴롭게 느낄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동일한 희생에 따라 과세되는 능력과세 범위에서 시장기능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분배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러한 지불능력원칙의 특수한 정의는 능력원칙에 의한 과세와 소득 재분배에 대한 명확한 구별을 가능하게 한다. 이 개념에 따르면 소득 재분배는 동일한 상대적 희생을 넘어서 고소득자에게 보다 많은 과세가 이루어져 욕구충족 가능성을 평준화시키면 달성되게 된다. 이를 위하여는 이미 노출된 국민들의 소득을 기초로 한 효용곡선들을 사용화 할 수 있어야만 한다. 효용 곡선들은 소득세의 주어진 누진의 경우 동일한 상대적 희생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소의 크기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연도별 조세부담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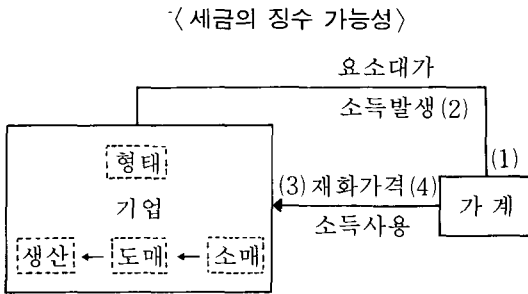
(단위 : 십억원, %)

구 분	'88(예산)	'89	'90	'91	'92
• 국민총생산	109,548	121,318	134,354	149,486	166,322
• 租 稅 計	18,919	21,409	24,908	28,745	33,238
• 國 稅 計	16,562	18,429	21,369	24,520	28,140
내 국 세	10,753	12,354	14,695	17,215	20,161
관 세	2,181	1,885	1,822	1,764	1,660
방 위 세	2,438	2,867	3,467	4,076	4,773
교 육 세	448	539	594	665	739
전매납부금	742	784	791	800	807
• 지 방 세	2,357	2,800	3,539	4,225	5,098
• 조 세 부 담 률	17.3(17.9)	17.6	18.5	19.2	20.0
• 국 세	15.1(15.7)	15.2	15.9	16.4	16.9
내 국 세	9.8(10.2)	10.2	10.9	11.5	12.1
관 세	2.0(2.1)	1.6	1.4	1.2	1.0
방 위 세	2.2(2.3)	2.4	2.6	2.7	2.9
교 육 세	0.4(0.4)	0.4	0.4	0.5	0.4
전매납부금	0.7(0.7)	0.6	0.6	0.5	0.5
• 지 방 세	2.2(2.2)	2.4	2.6	2.8	3.1

※()은 對前年 증가율

4. 과세의 형태와 정책 방향

과세는 다음 도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징수가능성에 따라서 3가지로 대별되어질 수 있다.



즉, 소득 발생시와 소득의 지출시 그리고 자산에 대하여 상이한 형태로 과세되어질 수 있다.

① 소득 발생시의 과세 : 소득 발생시의 과세는 주로 소득세와 수익세로 구분되어진다. 소득세는 조세 주체가 소득을 갖는 사람이며 과세대상은 소득으로써 개인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가 이에 속한다.

수익세는 조세의 주체를 일정한 수익 원천인 생산요소를 지배하는 사람으로 하며 조세대상은 수익이 된다. 이에선 주로 토지세, 건물세, 사업세 그리고 기업 수익세가 이에 속한다.

먼저 소득세 부분을 관찰하여 보면 소득이란 시민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점에서 징수될 수 있다. 이러한 소득은 노동력의 제공, 토지나 자본의 공급에 대한 댓가로써 발생한다. 소득에 대한 과세는 현재의 소득세 및 원천징수 과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득이 생성되는 장소 및 시점에서 행하여진다. 소득이 발생 장소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여러가지 과세의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소득세는 소득이 소득 수용자에게 가기전에 법인들에 의

해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소득 발생시의 과세는 과거의 전략산업과 저축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높아진 국민의 소득수준은 소득세 과세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세제를 개혁하는데 있어 공평성의 원칙을 도입하여 근로자등 중산층이하 소득계층에 대하여는 세부담을 경감하고 불로소득이나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이미 추진되고 있는 비실명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폭을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명금융자산소득의 소득세율과 비실명자산에 대한 소득세율간의 격차는 두배이나 이를 3배이상 수준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가계저축의 우대적용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특수한 소득형태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 차익이나 연금과 같은 장기형성 저축에 대해서도 공평성의 원칙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특수직종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비과세소득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시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소득세의 현재의 세율체계를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체계화시켜 나아가기 위하여 현재의 16단계로 되어있는 소득세율 단계를 10단계 수준으로 축소시켜 누진단계를 현재의 55%에서 50%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 이하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재의 5인 가족기준 247만원으로 되어있는 근로소득의 면세점을 최소한 300만원수준으로 인상시키고 누진세율체계도 완화 적용되어야 한다.

공평과세로서 소득세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기 위하여는 누진세율의 인하와 함께 근로소

득의 비과세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현행의 소득세제에 따르면 부분적이거나 근로소득 공제대상으로써 근로자의 필요 경비가 인정되고 있으나 기업의 사업소득에 비하면 대단히 미미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자기차를 가지고 업무수행을 할 경우에 20만원 한도에서 그 경비가 비과세되고 있다.

따라서 차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는 그렇지 못한 근로자에 비해 고소득자로서 이들에게는 통근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근로능력재고와 업무의 원활화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근수당, 급식수당 그리고 피복수당 등을 과세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공평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특정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활동비나 교원들이 받고있는 연구보조비 등도 비과세되고 있음을 보일때 이들 수당들도 비과세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소득발생시에 과세되는 세금의 내용은 공평성의 원칙과 소득재분배의 기본적 정책과제를 위한 수단으로써의 기능이 다하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적공제 및 근로소득공제, 노인 및 장애자공제 그리고 교육 및 특수한 재난 등에 대한 공제가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인적공제 및 근로소득공제에 있어 현행의 면세소득 규모인 274만원은 최소한 35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제 대상에 있어서도 현행 소득세의 인적공제내용을 구성하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내용을 확대하여 추석이나 연말수당을 대상으로 한 전통적 풍습에 따른 새로운 공제내용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노인 및 장애자 공제에 있어서는 경로우대 대상자에 대한 일반인적공제 이외에 이들을 위한 경로우대 특별공제의 신설이 필요하며 부

양가족중 장애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액수의 공제한도액 보다는 실질적인 비용을 인정하는 인정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장애자에 의한 가족의 부담을 크게 덜어 줄 필요가 있다.

자녀 교육비 공제 문제에 있어서는 이들의 목적세인 만큼 한편으로는 시한이 끝나는대로 교육세를 철폐하여야 할 것이며 공제내용에 있어서도 증대되는 교육비 부담을 고려하여 현행 연간 12만원에 해당되는 공제액을 최소한 3배로 확대시켜야 하고 이도 자녀수에 따라서 비례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공제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녀 1명에 대한 교육공제액이 12만원일 경우에는 둘째자녀에 대하여는 30만원의 교육비공제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수익세 부문에서는 주로 기업 수익세와 관련된 부문의 정책적 계산이 필요하다. 이들 가운데서 중요한 부문만을 지적하여 보면 먼저 원화질상과 무역마찰조건하에서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제도의 개선이 절실하게 요망된다. 즉 생산제의 내용연수를 대폭 축소하고 잔존가액을 축소시키므로써 상각가능액을 확대시키고 생산제의 성격에 따라 소액 즉시 상각자산의 범위를 대폭 넓혀야 한다. 또한 기업의 자기 자본중심의 자본구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증자소득공제제도 차입이자 손비부인제도 그리고 배당액 공제제도의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증자소득 공제 제도의 경우에 현재에는 증자액의 15~18%를 법인소득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증자소득 공제제도는 폐지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신 현재의 배당 세액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배당소득에서 법인단계에서 직접적으로 부담한 세금만큼을 공제하여 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자기자본을 동원한 경영이 차익금을 동원한 경

영보다 유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평성의 원칙에 따라 법인유형간의 과세형평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낮은 세율은 높이지 않는다 하여도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이나 주식양도차익과 같은 내용은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만 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준조세 규모는 대단히 크다(표 참조).

〈매출액 대비 준조세 및 투자 수준 동향〉

연 도	1980	1981	1982	1984	1985	1986
준조세부담수준	0.48	0.55	0.66	0.85	0.77	1.08
연구/개발 투자수준	0.47	0.54	0.51	1.03	1.23	1.35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이러한 준조세는 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전액손금으로 인정하는 기부금의 손금허용 한도를 대폭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결손기업이 준조세 명목의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이를 인정해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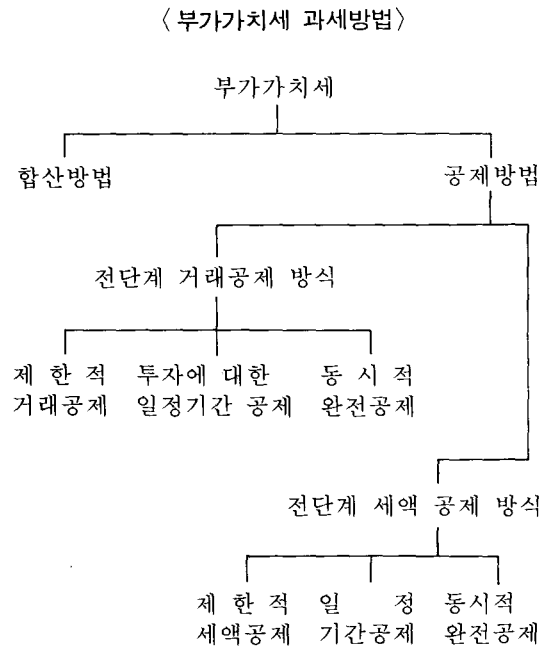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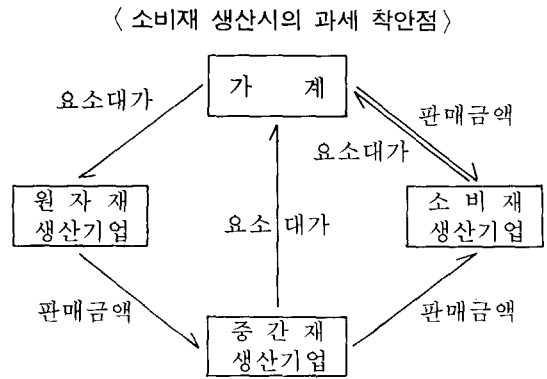
② 소득 사용시의 과세

소득은 사용시점이나 사용의 흐름에 따라서도 과세될 수 있다. 먼저 소득의 사용 흐름이 총체로 파악되는 과세 형태를 보면 구매과정 또는 소비행위를 들 수 있다. 과세가 소비행위를 파악하면 먼저 모든 소비재화의 전체가 일반소비세로써 과세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개별 소비재화들이 개별 또는 특별소비세로써 세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조세 정책적인 운영에서 소득사용과세는 구매과정을 중심으로 관찰된다. 거래 또는 매출액에 대한 과세의 특징은 과세시에 개별 재화에 대한 구분없이 모든 거래행위가 과세의 근거가 되며 한 재화의 거래는 어떤 개인이 그 재화를 구매하였느냐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기업에서의 과세 착안점을 갖는 세금들과는 반대

로 여기에서 거론되는 세금들은 실제로 소득사용의 흐름에서 징수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소득의 사용을 지불면에서 보면 다음 도표에서와 같이 종합될 수 있다. 각 개별 기업에 대한 타기업에서의 구입과 지불된 요소대가를 포함하면 기업이 완전히 구매할 수 있는 생산가치 즉, 매출액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생산가치는 타기업에서 구입한 단계별 투입물 사유의 차액 즉, 부가가치 금액에만 과세될 수도 있다.



소득 사용시의 과세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특별 소비세 부문의 계산이 필요하다. 국민 경제와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많은 특별 소비세 대상 품목들이 오늘날 생활 필수품으로써 사용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특별 소비세의 인하는 물론 세율체계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5~100%까지 11단계로 구분된 세율체계를 3~5 단계로 단순화 시키고 중심 세율도 현재의 40%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인하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아직은 사치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고가 사치품들을 특별 소비세과세 대상으로 추가시켜야 한다.

소비 지출세 부문에 속하는 부가가치세의 면에 있어서는 현재 관광 Hotel이나 외국인 전용 판매장 등에서 면제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공평성의 원칙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단기 거주 외국인이나 관광객에 의한 거래부문에 있어서는 과세된 부가가치세는 사후 환급제도의 도입이 요망된다.

시장경쟁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주세제도의 개편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먼저 규제 중심의 행정적 관리체도를 과감히 개선하여야 한다. 주류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주류가 다양화되고 고급화 될 수 있도록 주세 세율체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위스키의 주세는 200%이며, 맥주는 150% 포도주는 25%, 소주는 35% 등이다. 이와같은 주세는 대중화 되어 있는 주류를 중심으로 주류간의 세율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료에 대한 관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중간제 및 완제품의 관세율 책정이 높을 수 밖에 없으므로 국내투자재원 분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료 관세율을 중심으로 전체 관세율 체계를 하향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부문을 고찰하여 보면 현행의 평균 관세율이 18.1%에 달하는 관세율 체계는 선진

국의 수준보다 대단히 높다. 즉 미국은 6.2% 일본은 5.9%, EC는 7.9%이며 우리나라와 비교대상이 되는 대만도 11.7%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제무역분쟁을 예방하고 변화하는 국제 시장에서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행 관세율 체계를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병행하여 관세의 체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관세감면제도의 정비로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87년도의 관세감면 규모는 전체 징수액의 11%에 달하는 약 3,400 억 원에 이르고 있다.

③ 재산 영역에 대한 관세

과세는 재산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된 재산의 상태와 재산으로부터 얻게된 수익이 과세 측정기준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 재산에 대한 과세는 일반적으로 재산에 의한 제반수익으로써 충당될 수 있는 재산 자체에 대하여 과세될 수도 있고 재산에서 발생하는 재산수익을 대상으로 과세할 수도 있으며 재산고저의 변화에 대하여도 과세할 수 있다.

재산 영역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재산상태에 따른 과세 이외에도 재산거래과세 그리고 재산증식세 부문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개선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과세대상은 재산의 거래와 증식에 따른 과세이다.

상속 및 증여세 부문을 보면 현행 세율이 명목상으로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누진단계도 필요이상으로 많아 조세 회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으며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최저 세율적용 소득계층을 현재의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최소한 높일 필요가 있으며 세율도 현재의 7~10%에서 10~50%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증여세의 경우에도 세율구조를 상속세와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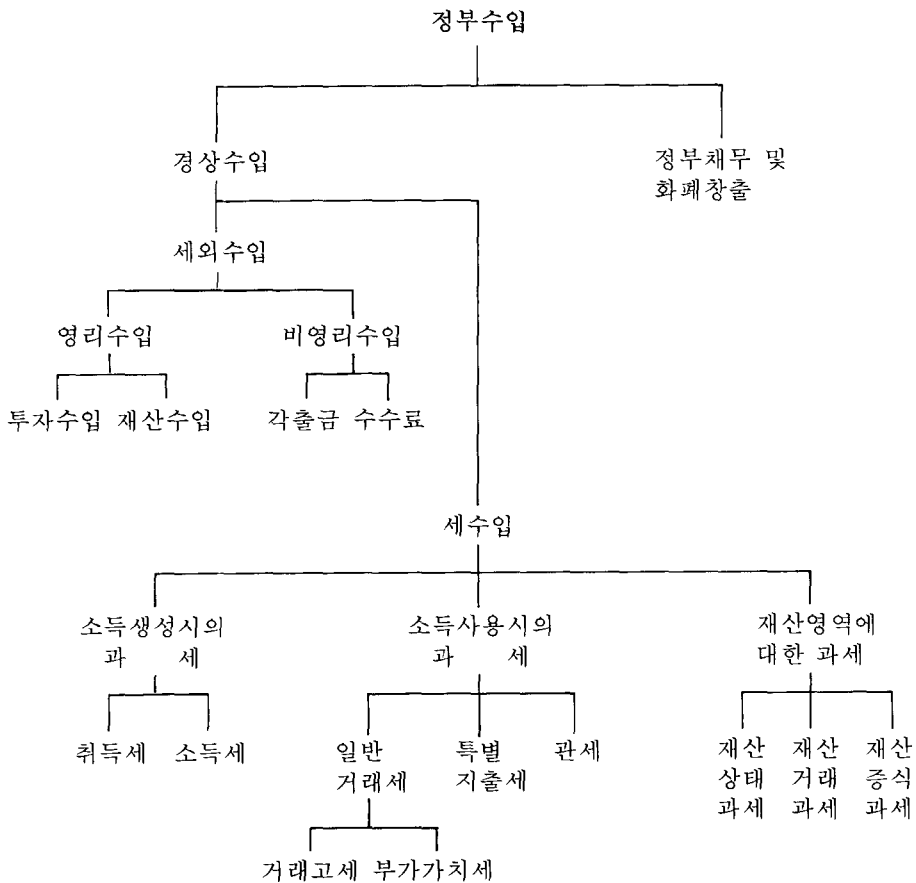
한 수준으로 축소하는 반면 최저 세율적용계층도 200만원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상속자의 인적상태를 고려한 인적 공제내용의 대폭적인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양도 소득세 부문에 있어서 양도차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2년미만 고유재산의 양도 차액에 대하여는 50%, 그리고 2년이상 고유재산은

40%가 과세되고 있으나 이를 양도차액의 정도에 따라 누진적으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 누진과세의 도입 경우 양도차액의 정도는 보유기간이 고려되는 가운데 누진적으로 과세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각종 감면조치가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 정부 재정 조달 방법 〉



5. 맺음말

현행의 세제는 재정자립과 개발재정의 수요 충족을 위한 세제이다. 이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저축을 보호하여 경제개발 자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져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환경의 변화는 세제가 갖는 국가 재정 관리수단으로서의 기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복지재원의 충당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오늘날의 세제는 과세의 공평화와 재정지출면에 있어서의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대적으로 낙후된 세제의 비합리성이 개선되도록 하는 한편 세금간의 균형적인 조정이 요망된

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서나 비실명이자 및 배당소득에서 인식될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과세대상은 공평성의 원칙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며 과세의 내용을 결정하는 세율 및 감면 부문에 있어서도 소득의 상태와 정도에 따라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률적인 소득공제액의 인상은 그 효과가 저소득층 보다 고소득층에 더 돌아가며 그만큼 세수만 크게 감소하는 결과가 된다.

끝으로 세제의 개편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단계적인 개선도 중요하나 이의 공평성을 기본으로 한 지속성과 진실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